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
GUIDE BOOK**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
GUIDE BOOK**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1길 51 연남빌딩 4층, 5층
TEL. 02-528-5586 E-MAIL. mail@onyul.or.kr WEB.onyul.or.kr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

CONTENTS

제1장

비영리조직을 위한 법적 조직형태

| | |
|------------|----|
| I 들어가며 | 09 |
| II 비영리민간단체 | 09 |
| III 비영리법인 | 12 |
| IV 사회적협동조합 | 24 |

제2장

세법상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 | |
|--------------------------|----|
| I 들어가며 | 31 |
| II 공익법인등(舊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31 |
| III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 38 |

제3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 등록

| | |
|-------------------|----|
| I 「기부금품법」상의 주요 개념 | 43 |
| II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 44 |
| III 기부금품 모집 절차 | 46 |
| IV 기부금품법 위반시 제재 | 48 |



제1장

비영리조직을 위한 법적 조직형태



I 들어가며

개인 또는 조직이 비영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거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의 개인·조직(이하 “비영리스타트업”)은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조직이 안정궤도에 오르면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법인설립 또는 단체등록을 통한 비영리스타트업의 법적 조직형태 구축은 이러한 고민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조직의 법적 조직형태는 단체의 활동목적 및 인적·물적 규모 그리고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비영리 사업의 분야 및 활동 내용 등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직형태는 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할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다른 조직형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인 제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결정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비영리스타트업의 조직형태결정을 포함하여 비영리스타트업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비영리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적 조직형태인 ① 비영리민간단체, ②사단법인, ③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II 비영리민간단체

1.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법인,비법인 모두 해당) 아래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후술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의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요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 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나.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라.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마.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Q&A]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¹⁾

-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재량행위로서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신청인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을지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허가가 아닌 등록을 요하므로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절차

| 순서 | 내용 |
|---------------------------------|--|
| 등록기관검토 | <p>「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p> <p>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3조 제1항 전문).</p> <p>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가 특례시에만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문).</p> |
|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 | - |
| 등록번호 부여·등록증 교부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등재 | <p>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동조 제2항).</p> |

1) 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2022, 6p

관보(공보)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 통보

동 시행령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동조 제3항).

4. 신규등록 신청서류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회칙(정관) 1부 (간인)

다.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라.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에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마. 회원명부 1부

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사. 단체 소개서

아. 조직 기구표

자.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5.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 제2항).

가. 행정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나. 재정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1항).

[주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등록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등록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비영리법인

1. 정의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을 의미합니다.

2.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인 반면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재단법인의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비영리스타트업의 경우 재단법인의 형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북에서는 비영리스타트업의 조직형태에 보다 적합한 사단법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²⁾

가. 개요

| 순서 | 내용 |
|------|---|
| 설립준비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 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설립허가여부를 판단한 후 설립허가 처분 또는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 설립등기 |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

나. 설립준비단계

1) 정관 작성

가)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서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등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민법」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모두 정관작성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www.easylaw.go.kr), 비영리사단법인편 참조

나) 정관의 중요성

법인은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활동은 법인의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 민법상 법인의 정관은 민법 제42조, 제45조에 의하여 설립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 개최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만큼 신중을 기하여 작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판례] 대법원 2007. 2. 16. 선고 2004도1632 판결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주요판례] 대법원 1965.7.6. 선고, 65다854판결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목적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하여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법인을 위하여 그 효력이 없다.

다) 정관 기재사항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① 목적(제1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영리 아닌 사업이어야 합니다.
- ② 명칭(제2호):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명칭의 존재 여부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³⁾
- ③ 사무소의 소재지(제3호): 도로명과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까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자산에 관한 규정(제4호):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출자 의무(회비)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립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규모는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에 사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제5호): 이사의 임면방법에 관한 규정, 즉 이사의 수, 자격, 임기, 선임과 해임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⑥ 사원자격의 특실에 관한 규정(제6호)
-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제7호)

3) 서울특별시의 경우 영리·특수법인 명칭과 동일 및 유사하더라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변경을 권장하고 있으며 법인의 성격과 맞지 않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생존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게 할 의도의 명칭·혐오 조장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명칭은 제한하고 있습니다(출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 행정 > 서울특별시 (seoul.go.kr))

[주의] 법인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을 위하여 아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표준 정관

(출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행정 < 서울특별시 (seoul.go.kr))

사단법인 ○○○○ 정관

2001. 1. 1. 제정
2006. 1. 1. 개정

제정 날짜를 삽입하고, 이후 정관변경 시마다 개정 날짜를 삽입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영문 명칭, 약칭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하므로 동일명칭 법인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명칭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상호 찾기"에서 명칭 입력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법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소는 서울특별시까지만 명기합니다. 정관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경우, 주소 변경시마다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개회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차후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소재지를 명기하고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지부가 설치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로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례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사례2]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에 제시된 사업을 총괄하는 내용으로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이면서도 2줄 정도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 2.
- 3.
- 4.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서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법인 허가의 기준이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목록을 작성합니다.
백화점식 사업 나열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사례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2]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5조에서 회원이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된 경우)

[사례2]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5인~○인(이사장을 포함한다)

※ “이사장”은 “회장”으로 할 수 있으며, 회장으로 할 경우 관련 조문에 “이사장”을 “회장”으로 표기합니다.
 ※ 이사는 필수 기관이며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감사는 필수 기관은 아니지만 최소 1인 이상 두는 것을 권장하며, 법인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이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감사 ○인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선택 삽입 조항
 [사례1] 제0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사례2] 제00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2년 혹은 3년을 권장합니다.
 ※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사례1]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법인의 회원 수가 200인 초과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표기
 -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20%를 권장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음)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 불가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불가
 -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사례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 2(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권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례1]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권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항임(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되는 법인만 해당)

제3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일상적 총회와 달리 해산 및 정관변경 시는 정족수가 다릅니다.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②항을 필수조항으로 삽입해야 합니다.(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되는 법인만 해당)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0000년 00월 00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2) 창립총회 개최

가) 창립총회의 의의

창립총회란 정관 승인, 임원 취임, 법인 재산,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하는 최초의 총회를 의미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원은 평등하게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창립총회 준비 유의사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총회에서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합니다(「민법」 제75조 제1항). 이 때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5조 제2항). 총회가 종료된 후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조 제1항·제2항).

다)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관련규정]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관련규정]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다. 설립허가단계

1) 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기준)

- 가)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나) 설립발기인 명단 1부
- 다) 정관 1부
- 라)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마)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 바)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 사)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아) 사무소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 자) 법인 소개서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서류별 검토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가능성 및 목적사업 수행능력,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하였다고 해서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제출서류를 통해 위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허가요건과 제반사항을 고려한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설립등기단계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또한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IV 사회적협동조합

1. 정의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Q&A]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의 유형 중 하나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입니다.

2. 설립 절차⁴⁾

| 구분 | 내용 |
|--------|---|
| 발기인 모집 |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

| | |
|--------------|--|
| 정관 작성 | <p>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 발기인 모집 | <p>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2항).</p> <p>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호).</p> |
|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여야 하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 |
| 설립인가 신청 및 발급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
| 출자금 등 납입 |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1조). |
| 설립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
| 사업자등록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www.easylaw.go.kr), 사회적협동조합편 참조

3. 사단법인과 차이점

| 구분 | 사회적협동조합 | 「민법」상 사단법인 |
|----------|---|------------------------------------|
| 목적 | 조합원 실익증진, 주 사업 수행 |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
| 임원 | 이사 필수기관 (이사장 1인 포함, 3인 이상) 감사 필수기관(1인 이상) | 이사 필수기관 (인원 수 제한 없음) 감사 임의기관 |
| 최소 조합원 수 | 5인 | 제한 없음 |
| 설립방식 | 인가 | 허가 |
| 주 사업비율 | 주 사업 40% 이상 수행 | 제한 없음 |
| 출자금 납입 | 의무 | 해당 없음 |

4.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사업과 금지사업(「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가. 필수 포함 사업

-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2)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위 세 가지 필수 사업은 정관의 기타사업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금지사업: 금융 및 보험업

5.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특징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수행 의무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 사업이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2항).

-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관련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지역특산물·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나.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의무

출자금이란 조합원이 조합 운영을 위해 내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낸 출자금 합계가 사회적 협동조합 자본금이 됩니다.

- 1) 모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차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차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1항).
- 2) 다만 조합원 1인의 출차좌수는 총 출차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
- 3)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차액을 한도로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5항).
- 4)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제1항).

6.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해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 제1항)

가.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나.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 이상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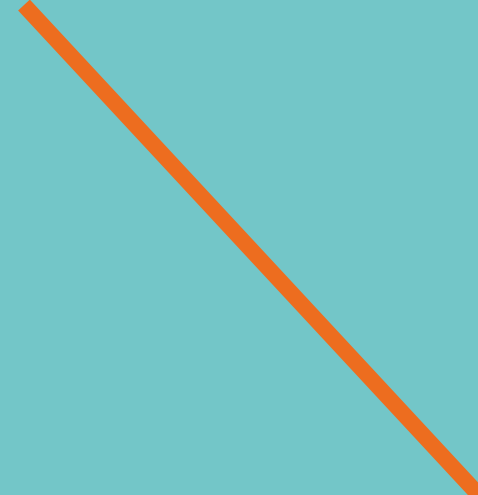
다. 합병·분할 또는 파산

라. 설립인가의 취소



제2장

세법상 공익법인
(舊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I 들어가며

‘기부’는 부의 이전에 해당되는 ‘증여’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세법은 기부를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품에 대한 과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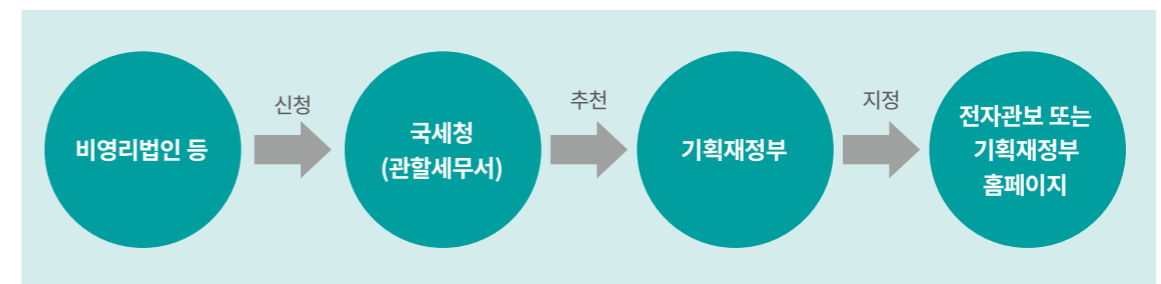
기부한 금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증빙되는데, 비영리법인 등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등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시점부터 해당 법인·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⁵⁾

즉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그 자체로 기부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로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지정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II 공익법인등(舊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 공익법인등 지정 절차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관할세무서)은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지정·고시 합니다.



2. 추천 대상 법인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5) [국세청 질의회신]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384)

세무서장을 포함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2)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3)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4)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설립목적에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의]⁶⁾

- ▶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블로그,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①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 ②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⁷⁾

라.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추천대상 요건 충족을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3. 추천신청시 제출 서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제2항)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

6)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7)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법인설립허가서 |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정관

다.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②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③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라.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마.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바.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4. 공익법인등 지정 효과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제24조제3항, 「소득세법」제34조제3항,).

가.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나.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관련 규정] 「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 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X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10\} +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20\text{과 종교단체 외의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text{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5.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가.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법인만 해당함).
- 2) 아래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법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함.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단,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 6)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총 자산가액이 100억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나.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3)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 구분 | 내용 | |
|------------------|------|-----------------------------|
| 전용계좌 개설신고 |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
| | 신고기한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 | | |
|------------------------------|------|--|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대상 |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 3개월 이내 |
| 결산서류 공시 |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
| | 공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 4개월 이내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상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 4개월 이내 |
|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⁸⁾ 제출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학교법인 제외) |
|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 4개월 이내 |

2) 공익법인 운영시 지켜야 하는 의무

| 구분 | 내용 | |
|---------------------|---|--|
| 장부의 작성·비치 |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 |
|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
| 전용계좌 사용 |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
|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 출연재산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 매각대금 |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 운영소득 | 1년 내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주식 취득·보유 |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10%(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5% |
| |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액이 총자산가액의 30% (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보유 금지 |
| 이사구성 등 제한 |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 |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제외) | |
| 기타 |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등 | |

8)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6. 의무 위반시 제재 사항

가. 공익법인등 지정 취소(「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제5항제 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4)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5)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

나.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관보에 게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국세청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III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추천 신청

1. 공익단체 지정절차(「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본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천 대상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이어야 합니다.

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을 초과하여야 하고, 이 경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라.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마.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로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②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③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①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행정안전부「2023년하반기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참조)

공익단체 지정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1부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다.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라.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마.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전년도 결산서 사본 1부

바.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각 1부

사.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설일, 단체도장 날인 등이 있는 면) 및 거래내역 사본 1부

아. 단체통장내역 1부

자.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1부

차.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4. 공익단체 지정 효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단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명세서 및 결산보고서 제출)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공익단체 의무

공익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아래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

가.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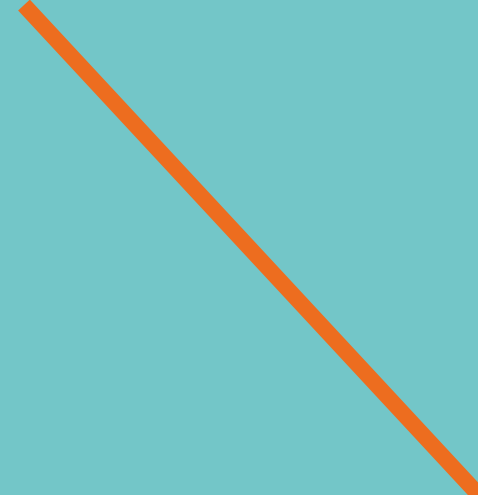
6. 공익단체 의무위반시 제재 사항

공익법인의 의무위반시 제재 사항과 동일합니다.



제3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약칭: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 등록



I 「기부금품법」상의 주요 개념

| 구분 | 내용 | 근거 조항 |
|-------|--|-----------------|
| 기부 | <p>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p> <p>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p> <p>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p> <p>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
| 기부금품 | <p>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됩니다.</p> <p>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p> <p>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p> <p>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p> <p>라.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부터 모은 금품</p> | 「기부금품법」 제2조 제3호 |
| 모집자 |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기부금품법」 제2조 제4호 |
| 모집종사자 |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기부금품법」 제2조 제5호 |

[주요판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 16765

▶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II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아래 항목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참고자료] - 기부금품 모집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7.>

[] 등록 [] 기부금품 모집 [] 변경등록

2001. 1. 1. 제정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_____ 접수일자 _____

| | | |
|-------------|----|-------------|
| 모집자 (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 | | |
|---|-----------------|--|---------|-----------|
| 모집자 (법인·단체) | 명칭 | | |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 모집목적 | | | | |
| 모집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용기한 | 년 | 월 일 |
| 모집목표액 | 원 | 모집지역 | | |
| 모집비용 | 원 이내(모집액의 % 이내) | | | |
| ※ 다음의 사항은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 | | | |
| 등록번호 | | 등록일 | 년 | 월 일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사유 | |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 서류 | 등록 |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 | | 수수료 없음 |
| | 변경 등록 |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 | |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

III 기부금품 모집 절차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단계

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 가.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 나.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 다.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라.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마.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 바.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

2. 기부금품 모집 단계

등록청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기부금품법」 제4조 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4조 제5항). > 이후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완료되면 모집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모집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가.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4조 제6항).

- 1)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모집자가 직접 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자의 성명 및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그 명칭, 연락처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모집종사자가 모집하는 경우: 가목의 정보 및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모집등록을 한 등록청 및 등록번호
- 3) 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목적

- 4) 기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혜택이 부여되는지의 여부
- 5) 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총당하는 비율
-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7) 그 밖에 기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6조).

다.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기부금품 모집등록계획서에 기재한 전용계좌로의 접수, ②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수,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로서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기부금품법」 제7조 제1항).

라. 기부금품의 접수사실(현장모집에 관한 사실을 포함)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①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②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7조 제2항).

3. 기부금품 모집 완료 단계

가. 기부금품 모집 결과 보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14조 제1항). 또한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 제1항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14조 제2항).

나. 기부금품의 사용

- 1)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총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①기부금품의 모집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 이 때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12조 제2항).
- 2)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2조 제3항).
- 3)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제13조)

※ 1천만 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의 경우, 소액모금 활성화를 위해 등록의무가 제외되는 것일 뿐 기부금품의 목적 외로 자유롭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⁹⁾ 또한 1천만 원 미만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기부금 모집을 하였으나 실제 기부금이 1천만 원을 넘은 경우, 그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하고, 모집자는 모집액이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¹⁰⁾

다.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

- 1)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4조 제3항).

IV 기부금품법 위반시 제재

기부금품법은 아래와 같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6조).

1.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나.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 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라.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 마.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9) 서울특별시, 『60개의 Q&A로 알아보는 기부금품 모집 안내서 서울, 기부길라잡이』, 2019. 11., 15p.

10)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01., 112p.

바.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사.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아.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나.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국세청, 「2024 공익법인 세무안내」 (2024.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3)

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2022)

서울시NPO지원센터, 「NPO설립기초안내서」 (2021)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2021.1)

법률정보센터, 「사단·재단·비영리·공익법인의 절차실무」 (2020)

서울특별시, 「60개의 Q&A로 알아보는 기부금품 모집 안내서 서울, 기부길라잡이」 (2019. 11)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1)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홈페이지(<https://www.easylaw.go.kr>)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